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51
----------	-----

2019. 3. 6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제안경위

- 2018. 10. 18. 김태수 의원 발의 (2018. 12. 28. 회부)

2. 제안이유

- 종전에는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호수·세대수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구분하였던 것을 임대사업자로 단일화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수당 등 지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알기쉬운법령 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민간임대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함(안 제2조제4호, 제16조 제목 및 제1항~2항)
-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함(안 제2조제5호 및 제11호~12호)

-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함(안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 제12조제6항)
-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3조제4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¹⁾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10월 18일 김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

- 안 제23조제4항은 ‘통합심의위원회²⁾’ 운영에 필요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속기사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과 관련하여, 서울시 산하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을 규정하는 조례³⁾를 직접 인용하려는 것임.
 - 이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이하 ‘수당·여비지급

1) 법률 제15356호, 2018.1.16. 일부개정, 2018.7.17. 시행

2) ‘통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19조에 따라 서울시장에 두는 위원회로서, 청년주택 건설 등을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의미함.(제19조제1항)

3)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붙임 참조).

조례)」 제3조(붙임 참조)에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시의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에 관해서는 수당·여비지급조례를 타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이 조례에 명시함에 따른 별도의 실익은 없으나, 조례 간 위계와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검토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개정안에 포함된 사항 중, 1)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물리적 설정 기준의 표기법을 “m”에서 “미터”로 표기하는 사항(안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다목)과

2)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사항(민간임대주택→민간 건설임대주택, 기업형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반영(안 제2,4,12조)은,

해당사항을 포함한 개정조례안이 지난 제283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어 공포·시행 중⁴⁾인 상황이고, 나머지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만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음.

-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이 사항은 없음.

담당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한 봉 수
연락처	02-2180-8207
이메일	bshan@seoul.go.kr

4) 의안번호 33번(시장제출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105번(김재형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병합심사(2018.9.10.)를 실시하였으며, 본회의에서 대안상정 및 가결(2018.9.14)되어 2018년 10월 4일 공포·시행되었음.

【붙임】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 2012.1.5.] [서울특별시조례 제5215호, 20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시의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수당)

- ①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의 심사수당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 ②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여비)

- ① 시의원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각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를 따른다.
- ② 제1항의 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한다.